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배재만 의원 외 6인

2. 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22.1.13. 시행)으로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성주군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인사위원회 설치, 회의록 작성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5조)

나. 시험응시 서류 및 수수료, 응시자격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11조)

다. 시험위원 선정, 시험수당 등 지급,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기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~제14조)

라. 신규임용시험 특전, 경력경쟁 임용시험, 전직시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~제20조)

마. 시험 합격자 등록 및 명부 작성, 임용결과통보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21조~제23조)

바.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, 연구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,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, 특별승진임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4조~제27조)

사. 가산점 평정,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, 격무·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8조~제30조)

아. 결원 보충 및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(안 제31조~제32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」,「지방공무원법」,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등
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1. 12. 17. ~ 12. 21.)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규칙안은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으로,

○ 성주군의회 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성주군의회 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본 규칙을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